

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 범위(제78조제6항 관련)

체류자격 (기 호)		업 무 구 분				
		체류자격 외 활동	근 무 처 변 경·추가	체류자격 부 여	체류자격 변 경	체류기간 연 장
외 교(A-1)				○	○	○
공 무(A-2)				○	○	○
협 정(A-3)				○	○	○
사증면제(B-1)						○
관광통과(B-2)						○
일시취재(C-1)						○
단기방문(C-3)				△		○
단기취업(C-4)		△	△		△	○
문화예술(D-1)		○	○		△	○
유 학(D-2)		○	○		△	○
기술연수(D-3)					△	○
일반연수(D-4)		○			△	○
취 재(D-5)					△	○
종 교(D-6)		△	△		△	○
주 재(D-7)		△	△		△	○
기업투자 (D-8)	영 별표 1의2 중 11. 기업 투자란의 가 목에 해당하는 사람	○	○		○	○
	영 별표 1의2 중 11. 기업 투자란의 나 목·다 목 에 해당하는 사 람	△			○	○
무역경영(D-9)			△		△	○
구직(D-10)					○	○
교 수(E-1)		△	△		△	○
회화지도(E-2)		△	○		△	○

연 구(E-3)	◁	◁		◁	○
기술지도(E-4)	◁	◁		◁	○
전문직업(E-5)	◁	◁			○
예술흥행(E-6)	◁	◁		◁	○
특정활동(E-7)	◁	◁		◁	○
계절근로(E-8)	○	○			○
비전문취업(E-9)	◁	◁		◁	○
선원취업(E-10)	◁	◁		◁	○
방문동거(F-1)			○	◁	○
거 주(F-2)			◁	◁	○
동 반(F-3)			○	○	○
재외동포(F-4)			○	○	○
영 주(F-5)			◁	◁	
결혼이민(F-6)			◁	◁	○
기 타(G-1)			◁	◁	○
관광취업(H-1)		○			◁
방문취업(H-2)	◁			◁	○

비 고

1. 표를 보는 방법 :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외 활동란, 체류자격부여란, 체류자격변경란에는 다른 체류자격에서 해당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외 활동, 체류자격부여, 체류자격변경에 대한 허가 권한의 위임 여부를 표시하고, 각 체류자격별 근무처 변경·추가란, 체류기간 연장란에는 동일한 체류자격에서 근무처 변경·추가,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허가 권한의 위임 여부를 표시함.
2. ○표는 법무부장관이 그의 권한을 청장·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것을 의미함.
3. ▷표는 법무부장관이 청장·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을 의미함.
4. □표는 해당사항 없음을 의미하고, 빈칸(표시 없음)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임을 의미함.

자격별 권한의 위임범위 내용

체류자격	업무구분	위 임 내 용
단기방문 (C-3)	체류자격 부여	○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한 단기방문(C-3) 자격 부여 ○ 무사증 불허국가 국민으로 영주자격 상실 대상자가 최초 입국한

체류자격	업무구분	위 입 내 용
		경우 단기방문(C-3) 자격 부여
단기취업 (C-4)	체류자격외 활동허가	○ 아래 대상자로서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(C-4)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- 투자자 등(D-7, D-8, D-9)의 자격소지자중 국내기업(투자기업포함)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- 전문인력(E-1, E-3~E-5, E-7) 자격소지자 ○ 아래 대상자로 90일 이내 계절근로 단기취업(C-4)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-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에 해당되는 체류자격(F-1-5) 소지자 -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에 해당되는 체류자격(F-1-9) 소지자 ○ 기타(G-1)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-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-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-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○ 방문동거(F-1) 자격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적인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
	근무처 변경· 추가 허가	○ 단기취업(C-4) 자격 소지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근무처 변경·추가허가
	체류자격 변경허가	○ 노벨수상자 또는 저명인사의 강의·강연활동에 대한 단기취업(C-4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·연주자·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사증(B-1, B-2자격) 또는 단기사증(C-3자격) 입국자에 대한 단기취업(C-4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·유지·보수,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·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·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중 무사증(B-1, B-2자격) 또는 단기 사증(C-3자격)으로 입국한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출신 엔지니어에 대한 단기취업(C-4) 체류자격 변경허가
문화예술 (D-1)	체류자격 변경허가	○ 해외입양으로 외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지 자격에 관계없이 문화예술(D-1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(D-1) 체류자격 변경허가
유학 (D-2)	체류자격 변경허가	○ 비유학자격 소지자에 대한 유학(D-2) 체류자격 변경허가 [단, 기술연수(D-3),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기타(G-1) 및 순수관광(C-3-2)·단체관광(C-3-2)·의료관광(C-3-3) 사증소지자는 제외]
일반연수 (D-4)	체류자격 변경허가	○ 해외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한국어 연수 등 일반연수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연수(D-4) 체류자격 변경허가

체류자격	업무구분	위 입 내 용
		○ 유학(D-2)자격에서 일반연수(D-4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국내에서 중·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유학목적 이외의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(D-4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(D-4) 체류자격 변경허가 [단, 순수관광(C-3-2)·단체관광(C-3-2)·의료관광(C-3-3) 및 관광통과(B-2) 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] ○ 국적 신청하여 방문동거(F-1) 자격으로 체류 중 귀화허가 불허된 자에 대한 어학연수(D-4-1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비연수자격 소지자에 대한 일반연수(D-4-1) 체류자격 변경허가 [단, 기술연수(D-3),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 및 기타(G-1) 자격 소지자 / 순수관광(C-3-2)·의료관광(C-3-3) 사증소지자 / 단체관광(C-3-2) 사증 소지 중국인 / 일본·호주·미국인을 제외한 관광·통과(B-2)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]
취재 (D-5)	체류자격 변경허가	○ 일시취재(C-1)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국내 장기취재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 장기취재(D-5) 체류자격 변경허가
종교 (D-6)	체류자격외 활동허가	○ 외교(A-1), 공무(A-2)자격 소지자에 대한 종교(D-6)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○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(D-6), 교수(E-1) 상호간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○ 기타(G-1)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-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-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-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○ 방문동거(F-1) 자격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적인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에 대한 종교(D-6) 체류자격외활동 허가
	체류자격 변경허가	○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종교(D-6) 체류자격 변경허가
주재 (D-7)	체류자격 외 활동허가	○ 기업투자(D-8)자격 소지자에 대한 주재(D-7)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○ 기타(G-1)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에 대한 주재(D-7) 체류자격 외 활동 <u>허가</u> -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-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-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○ 방문동거(F-1) 자격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적인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에 대한 주재(D-7)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
	체류자격	○ 기업투자(D-8)자격자가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주재(D-7) 체류자격

체류자격	업무구분	위 입 내 용
	변경허가	변경허가 ○ 단기상용(C-3-4)으로 입국한 칠레 국민 중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자격으로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,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주재(D-7) 체류자격 변경허가
기업투자 (D-8)	체류자격 외 활동허가	○ <u>벤처투자(D-8-2)·기술창업((D-8-4)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(E-1, E-3~E-5)에 대한 벤처투자(D-8-2)·기술창업(D-8-4)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</u>
무역경영 (D-9)	체류자격 변경허가	○ <u>점수제 무역비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한 무역업(D-9-1) 체류자격 변경허가</u> ○ 단기상용(C-3-4)자격을 소지한 칠레 국민이 관리자나 임원자격으로 또는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조사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(D-9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(B-1)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(D-9) 체류자격 변경허가 -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, 운영, 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(D-9) 체류자격 변경허가 - 수주선박 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(D-9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「외국환관리규정」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(D-9) 체류자격 변경허가 [단, 기술연수(D-3),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기타(G-1), 순수관광(C-3-2) 및 단체관광(C-3-2), 의료관광(C-3-3), 관광취업(H-1)*, 방문취업(H-2) 자격은 제외] * 관광취업(H-1)은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변경 불허 ○ 기업투자(D-8)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(D-9) 체류자격 변경허가
교수 (E-1)	체류자격 외 활동허가	○ 단기취업(C-4) 특정활동(E-7)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 교수(E-1)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

체류자격	업무구분	위 입 내 용
		○ 대학교원으로 임용되는 등록외국인(A-1, A-2, A-3 포함)의 교수(E-1)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○ 기타(G-1)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에 대한 교수(E-1)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-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-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-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○ 방문동거(F-1) 자격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적인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의 교수(E-1) 체류자격외 활동허가
	근무처 변경·추가 신고	○ 교수(E-1)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·추가 신고
	체류자격 변경허가	○ 소지한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교수(E-1)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한 교수(E-1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 고급인력에 대한 교수(E-1)자격변경허가 및 교수(E-1)·연구(E-3)자격 상호간 변경 허가 ○ 전문외국인력 《E-1 내지 E-6(단, E-6-2는 제외), E-7》의 배우자(F-3)에 대한 교수(E-1) 변경 허가
회화지도 (E-2)	체류자격 외 활동허가	○ 회화지도(E-2)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(A-1~A-3 포함)에 대한 회화지도(E-2)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○ 기타(G-1)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에 대한 회화지도(E-2)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-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-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-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○ 방문동거(F-1) 자격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적인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 대한 회화지도(E-2)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
	체류자격 변경허가	○ 교육과학기술부장관(시·도 교육감) 초청 원어민 외국인 보조교사로 채용되어 초·중·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소지한 자격에 상관없이 회화지도(E-2)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회화지도(E-2)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(A-1~A-3 포함)에 대한 회화지도(E-2) 체류자격 변경허가
연구 (E-3)	체류자격 외 활동허가	○ 외교(A-1), 공무(A-2)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(E-3)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○ 단기취업(C-4) 특정활동(E-7)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 연구(E-3)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○ 교수(E-1)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연구(E-3) 체

체류자격	업무구분	위 입 내 용
		류자격외 활동 허가 ○ 방문동거(F-1)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(E-3)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○ 특정활동(E-7)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연구(E-3) 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연구(E-3)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○ 기타(G-1)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에 대한 연구(E-3)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-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-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-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○ 방문동거(F-1) 자격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적인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에 대한 연구(E-3)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
	근무처 변경·추가 신고	○ 연구(E-3)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·추가 신고
	체류자격 변경허가	○ 유학(D-2)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(E-3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구직(D-10)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(E-3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연구(E-3)자격변경허가와 교수(E-1)·연구(E-3) 자격 소지자 상호간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자로서 아래 단체에 근무예정인 연구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연구(E-3) 체류자격 변경허가 - 특정기관육성법,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-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- 국·공립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○ 전문외국인력 《E-1 내지 E-5(단, E-6-2는 제외), E-7》의 배우자(F-3)에 대한 연구(E-3) 체류자격 변경허가
기술지도(E-4)	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	○ 협정(A-3)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(E-4)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○ 단기취업(C-4) 특정활동(E-7)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지도(E-4)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○ 방문동거(F-1)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도(E-4)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○ 특정활동(E-7)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기술지도(E-4) 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기술지도(E-4) 체류자격외 활동허가

체류자격	업무구분	위 입 내 용
		○ 기타(G-1)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에 대한 기술지도(E-4)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-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-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-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○ 방문동거(F-1) 자격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적인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에 대한 기술지도(E-4)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
	근무처 변경 · 추가 신고	○ 기술지도(E-4)자격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근무처변경 · 추가신고
	체류자격 변경허가	○ 유학(D-2)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(E-4) 체류자격 변경 허가 ○ 구직(D-10)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(E-4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려는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기술지도(E-4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전문외국인력 《E-1 내지 E-5(단, E-6-2는 제외), E-7》의 배우자(F-3)에 대한 기술지도(E-4) 체류자격 변경허가
전문직업 (E-5)	체류자격외 활동 허가	○ 협정(A-3)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(E-5)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○ 방문동거(F-1)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문직업(E-5)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○ 특정활동(E-7)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전문직업(E-5) 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전문직업(E-5)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○ 기타(G-1)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에 대한 전문직업(E-5)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-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-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-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○ 방문동거(F-1) 자격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적인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에 대한 전문직업(E-5)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
	근무처 변경 · 추가 신고	○ 전문직업(E-5)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 · 추가 신고
	체류자격 변경허가	○ 유학(D-2)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(E-5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구직(D-10)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(E-5) 체류자격 변경허가
예술홍행 (E-6)	체류자격외 활동허가	○ 등록외국인(외국인등록면제자포함) 중 방송, 영화, 모델활동에 출연하는 자에 대한 흥행예술(E-6) 체류자격외 활동 ○ 방문동거(F-1)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예술홍행(E-6)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○ 특정활동(E-7)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예술홍행(E-6)* 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예술홍행(E-6) 체

체류자격	업무구분	위 입 내 용
		류자격외 활동허가 *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,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(E-6-2)는 제외 ○ 기타(G-1)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에 대한 예술홍행(E-6)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-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-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-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○ 방문동거(F-1) 자격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적인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에 대한 예술홍행(E-6)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
	근무처 변경·추가허가(신고)	○ E-6-1, E-6-3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체류 중인 상태에서 근무처를 변경·추가 신고 ○ 세부자격 약호가 E-6-2인 호텔 등 관광유흥업소 종사 연예인으로서 소속된 공연기획사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고용주 변동이 있는 경우 근무처 변경·추가 허가
	체류자격 변경허가	○ 유학(D-2)자격 소지자에 대한 예술홍행(E-6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구직(D-10)자격 소지자에 대한 예술홍행(E-6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전문외국인력 《E-1 내지 E-5(단, E-6-2는 제외), E-7》의 배우자(F-3)에 대한 예술홍행(E-6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·연주자·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사증(B-1, B-2자격) 또는 단기사증(C-3자격) 입국자에 대한 예술홍행(E-6) 체류자격 변경허가
특정활동(E-7)	체류자격외 활동허가	○ 외교(A-1), 공무(A-2)자격 소지자의 특정활동(E-7)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○ 협정(A-3)·문화예술(D-1)·일반연수(D-4)·취재(D-5)·종교(D-6)·주재(D-7)·기업투자(D-8)·무역경영(D-9)·교수(E-1)·회화지도(E-2)·연구(E-3)·기술지도(E-4)·전문직업(E-5)·예술홍행(E-6)*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(F-3)자격 소지자의 특정활동(E-7)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*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,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(E-6-2)는 제외 ○ 방문동거(F-1)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정활동(E-7)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○ 방문동거(F-1), 동반(F-3)자격 소지자에 대한 외국인학교 교사(E-7)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○ 방문동거(F-1) 또는 동반(F-3) 자격소지자로서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(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)에서 외국어교열요원(E-7)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○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 및 국제학교 교사 등의 배우자, 본교 졸업생 등이 제주영어교육 도시 내 국제학교 및 상업

체류자격	업무구분	위 입 내 용
		시설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특정활동(E-7)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○ 기타(G-1)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에 대한 특정활동(E-7)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-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-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-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○ 방문동거(F-1) 자격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적인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에 대한 특정활동(E-7)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
	체류자격 변경허가	○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첨단기술분야 외국 우수인력에 대한 특정활동(E-7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합법체류자의 특정활동(E-7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전문외국인력 《E-1 내지 E-5(단, E-6-2는 제외), E-7》의 배우자(F-3)에 대한 특정활동(E-7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방문취업(H-2)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이며, 연령, 학력,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공에 대한 특정활동(E-7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문화예술(D-1) · 유학(D-2) · 일반연수(D-4) · 취재(D-5) · 종교(D-6) · 주재(D-7) · 기업투자(D-8) · 무역경영(D-9) · 구직(D-10) · 교수(E-1) · 회화지도(E-2) · 연구(E-3) · 기술지도(E-4) · 전문직업(E-5) · 예술홍행(E-6)* 체류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(F-3)에 대한 특정활동(E-7) 체류자격 변경허가 *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,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(E-6-2)는 제외
비전문취업(E-9)	근무처변경·추가 허가	○ 비전문취업(E-9)자격자의 근무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, 노동부의 고용허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무처변경 허가
	체류자격 변경허가	○ 기타(G-1)자격 소지자로서 질병치료 또는 재판을 마친 경우 직전 비전문취업(E-9)자격의 국내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전문취업(E-9) 체류자격 변경 허가
	체류자격 외 활동허가	○ 선원취업(E-10) 자격 소지자로서 원래 부여된 체류자격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육상근무활동 허용 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
선원취업(E-10)	근무처변경·추가 허가	○ 사업장의 휴폐업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수협중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변경 신청을 한 경우(횟수 제한 없음) ○ 고용해지 등 신고 이후 3개월 이내 수협중앙회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받아 근무처변경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. 다만, 업무상 재해나 질병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근무처변경 허가 가능

체류자격	업무구분	위 입 내 용
		○ 기타(G-1)자격 소지자로서 질병치료, 산재 또는 재판을 마친 경우 직전 선원취업(E-10)자격의 국내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전문 취업(E-10) 체류자격 변경허가
방문동거 (F-1)	체류자격 변경허가	○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가 국민에 대한 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우리나라 국적취득절차(국적회복, 귀화, 국적판정)를 밟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방문동거(F-1-7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단기방문(C-3)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동포 1세 등에 대한 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 근무하는 자의 동반가족 및 가사보조인에 대한 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(F-2)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난민인정자(F-2-4)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외국국적동포의 만19세 미만의 자녀(부 또는 모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)에 대한 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국민(국적취득한 중국동포)의 부모에 대한 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결혼이민자의 부모·가족에 대한 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 변경 허가 ○ 단기사증 소지자로서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미화 10만불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투자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자녀가 국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(1명)에 대한 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부 또는 모가 한국출생재한화교인 경우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20세 이상 미혼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사증(B-1, B-2 포함)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귀화허가(외국적동포) 등 신청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(F-6-3)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,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에 대한 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허위 국적취득으로 무국적자가 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장기체류자 거주(F-2-99)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개별지침 상의 사증발급 대상자 중 부득이하게 단기사증(B-1, B-2

체류자격	업무구분	위 입 내 용
		포함)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에 대해 인도적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대한민국 국적인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에 대한 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 변경허가
거주 (F-2)	체류자격 부여	○ 영주(F-5)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(F-2, 기간 : 1년) 체류자격 부여 ○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(F-2) 체류자격 부여 ○ 국민과 혼인관계(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)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거주(F-2-2) 체류자격 부여 ○ 거주(F-2-7,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)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거주(F-2-7) 체류자격 부여 ○ 단기사증 소지자 (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)로서 투자대상 부동산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의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시행령 별표 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 변경허가 ※ 다만, 기술연수(D-3) 및 단순노무인력(E-9, E-10), 기타(G-1)자격 등은 제외 ○ 영주(F-5)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로서 미성년인 경우 거주(F-2) 체류자격 부여 ○ 특별기여자 거주(F-2-16)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거주(F-2) 체류자격 부여 ○ 장기체류자 거주(F-2)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거주(F-2) 체류자격 부여
	체류자격 변경허가	○ 단기사증 소지자 (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)로서 투자대상 부동산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 대한 거주(F-2) 체류자격 변경허가 ※ 다만, 기술연수(D-3) 및 단순노무인력(E-9, E-10), 기타(G-1)자격 등은 제외 ○ 연령, 학력,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(F-2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(F-2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국민과 혼인관계(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)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거주(F-2-2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(F-2-2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영주(F-5)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(F-2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(D-8)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거주(F-2-5) 체류자격 변경허가

체류자격	업무구분	위 입 내 용
		○ 교수(E-1) 내지 특정활동(E-7), 유학(D-2), 취재(D-5) 내지 구직(D-10) 자격 소지자의 거주(F-2-7,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단기사증 소지자로서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 대한 거주(F-2-8, 부동산투자이민자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한 거주(F-2-99, 장기체류 외국인) 체류자격 변경허가 - 문화예술(D-1), 취재(D-5), 종교(D-6), 주재(D-7), 기업투자(D-8)*, 무역경영(D-9) * 신청 당시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상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- 예술흥행(E-6-1,3), 교수(E-1), 회화지도(E-2), 연구(E-3), 기술지도(E-4), 전문직업(E-5), 특정활동(E-7) - 동반(F-3)** ** 동반(F-3) 자격자는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○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결혼이민자(F-6-2/국민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직접 자녀를 양육한 사람에 한함)에 대한 거주(F-2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거주(F-2-7,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)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거주(F-2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주한미군 현지 체대자에 대하여 체류목적에 따라 거주(F-2) 체류자격 변경허가 ○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였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거주(F-2-16) 체류자격변경허가
영주 (F-5)	체류자격 부여	○ 아래 대상자에 대한 영주(F-5) 자격 부여 -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(F-5)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영주(F-5) 체류자격 부여 -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주자격을 상실한 사람
	체류자격 변경허가	○ 아래 대상자에 대한 영주(F-5) 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허가 - 대한민국 「민법」에 따른 성년으로서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중 10. 주재(D-7)부터 20. 특정활동(E-7)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. 거주(F-2)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- 국민 또는 영주자격(F-5)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-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 투자

체류자격	업무구분	위 입 내 용
		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-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중 26. 재외동포(F-4)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-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「국적법」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- 종전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. 4. 18. 공포·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)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(F-2) 체류자격(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-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주자격(F-5)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-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, 영주자격(F-5)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- 과학·경영·교육·문화예술·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-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-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중 29.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. 거주(F-2)란의 사목 1)부터 3)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, 산업 분야의 특성,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-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-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중 24. 거주(F-2)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-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중 24. 거주(F-2)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(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) -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중 11. 기업투자(D-8)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

체류자격	업무구분	위 입 내 용
		-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-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중 11. 기업투자(D-8)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-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중 24. 거주(F-2)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
결혼이민 (F-6)	체류자격 부여	○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(F-6) 체류자격 부여 ○ 국민의 배우자로서 임신, 출산, 자녀양육 등 기타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결혼이민(F-6) 체류자격 부여 ○ 국민과 혼인관계(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)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 대한 결혼이민(F-6) 체류자격 부여
	체류자격 변경허가	○ 국내 합법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결혼이민(F-6) 체류자격 변경. 다만 제한 대상{단기체류자, 형사범(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),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} 및 제한 대상이었으나 기타(G-1) 자격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○ 국민의 배우자로서 임신, 출산, 자녀양육 등 기타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결혼이민(F-6) 체류자격 변경 ○ 국민과 혼인관계(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)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 대한 결혼이민(F-6) 체류자격 변경 ○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합법체류 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결혼이민(F-6) 체류자격 변경. 다만 제한 대상{단기체류자, 형사범(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),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} 및 제한 대상이었으나 기타(G-1) 자격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○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(F-6) 체류자격 변경허가
기타 (G-1)	체류자격 부여	○ 불법체류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타(G-1) 체류자격 부여 ○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기타(G-1) 체류자격 부여

체류자격	업무구분	위 입 내 용
		○ 합법체류 중인 난민신청자의 17세 미만 국내 출생 자녀로서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타(G-1) 체류자격 부여 ○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기타(G-1) 체류자격 부여 ○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
	체류자격 변경허가	○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- 단, 밀입국자(무단 하선자 포함), 위·변조여권 행사자 제외 ○ 질병,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○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○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○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○ 임신, 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○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○ 합법체류 중인 난민신청자의 17세 미만 국내 출생 자녀로서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○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 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○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 ○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과 그 가족
관광취업 (H-1)	체류기간 연장허가	○ 관광취업(H-1)자격 소지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
방문취업 (H-2)	체류자격 변경허가	○ <u>방문취업으로 체류 중 부득이하게 기타(G-1) 자격으로 변경된 후 다시 방문취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방문취업(H-2-9) 체류자격 변경허가</u> ○ 국적신청 후 방문동거(F-1) 자격으로 변경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사람에 대한 방문취업(H-2-9) 체류자격 변경허가 - <u>다만, 방문취업 만기 예정자, 국적신청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기타(G-1)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나 혼인 단절된 사람 등 국내 체류 목적으로 국적을 신청한 사람 등은 제외</u> ○ 동포방문(C-3-8) 자격으로 입국한 18세 이상 중국국적 동포로서 <u>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41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 대한 방문취업(H-2-9) 체류자격 변경허가</u> ○ <u>18세 이상 동반(F-3) 자격*으로 체류 중인 중국 및 구소련지역(CIS) 6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방문취업(H-2-9) 체류자격 변경허가</u> * 舊 '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방문동거(F-1-9, F-1-11)' 자격자 포함 ○ <u>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익에 기여한 사람, 인도적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, 출장소)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한 방문취업(H-2-9) 체류자격 변경허가</u>

체류자격	업무구분	위 입 내 용
	체류자격 외 활동허가	○ 방문동거(F-1) 자격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적인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 자에 대한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○ 기타(G-1)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에 대한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 외 <u>활동허가</u> -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-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-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

1.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 본부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건으로 계속하여 활동하고자 하는
경우 별도 승인 불요
2. 사증면제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하여 기술연수(D-3), 비전문취업(E-9), 관광취업(H-1)을 제외한 모든
체류자격변경 허가